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규제개혁위 권고 적용예외로 규정〉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54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규제개혁위 권고 적용예외로 규정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7.
3.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2007. 2. 22. 선고 2003헌마428,600(병합) 결정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무시하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따라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단적인 예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 해당 조항의 철회를 두 차례나 권고하여 고용노동부의 규칙 개정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져 비판 여론이 비등한 뒤에야 3차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바 있음. 특히 국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 개정)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규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에 해당하여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생명·안전·환경 규제를 규제개혁위 권고 적용예외로 규정

☐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개선 권고한 생명·안전·환경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설·강화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개선 권고) ① (생략)	제14조(개선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u>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선하도록 권고한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1. <u>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u>
<신설>	2. <u>재난·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u>
<신설>	3. <u>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규제</u>
<신설>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u>
<신설>	③ <u>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소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되었으며, 당연직(정부)위원과 민간위원(총 구성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을 포함해 총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됨.¹⁾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²⁾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³⁾,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권고를 따르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함.⁴⁾

1)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2)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최근 폭염 중 휴식권 보장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⁵⁾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 철회를 권고하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재심사에서 입장을 변경한 사례⁶⁾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호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생명·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철회·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안전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현행법⁷⁾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⁸⁾,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7. 17.>

6) 위원회 결정의 변화(「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2025. 7. 11.)」)
(2025. 4. 25. 위원회 결정) 규제 철회권고 → (2025. 5. 23. 위원회 재심사 결정) 규제 철회권고 → (2025. 7. 11. 위원회 재심사 결정) 원안동의

7)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8) 폭염 중 휴식권 보장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정을 변경한 것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철폐·개선 권고는 헌법재판소 결정⁹⁾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폐·개선 권고 관련 규정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반영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 방지를 위한 핵심 조항으로 기능하며, 개정안과 같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의 효력을 약화시켜 규제심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9) <헌법재판소 2007. 2. 22. 선고 2003헌마428, 600(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규제 삭제 권고’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이를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그 내용에 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위원회의 권고가 그 상대방인 환경부장관에 대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인 국민이 직접 상대방 행정기관에게 그 권고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환경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 권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함.